

국제법 현안 Brief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성원 교수(한양대학교)

편집위원 이기범 교수(연세대학교)

오선영 교수(충실대학교)

오시진 교수(강원대학교)

김현정 교수(연세대학교)

투고문의 ksilbrief@gmail.com

웹사이트 www.ksil.or.kr

국제법 현안 Brief는 국제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최근 현안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에 대한 인식과 최근 국제법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고차방정식 이해하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김원희 책임연구원



사진 출처 : U.S. Navy photo by MC2 Indra Beaufort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1.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배경과 사실관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2026년 5월 4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대한민국 선박은 26척, 선원은 160명에 이른다.¹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기원은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란과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한 협상 끝에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다.² 그러나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조치와 제재를 실시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JCPOA를 복원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을 재개했지만, 이란의 핵개발 진척과 상호신뢰 상실 등 상황 변화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2025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과의 핵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던 중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고, 미국은 6월 21일 포르도(Fordow),

나탄즈(Natanz), 이스파한(Isfahan)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대해 병커버스터 폭탄 등을 사용하여 무력공격을 가했다.³ 이란도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 대규모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반격했다. 약 12일 간의 무력충돌 이후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2025년 6월 24일 휴전에 합의했고, 초기 충돌을 제외하면 휴전 합의가 전반적으로 이행되었다.

불안한 휴전 상황에서 오만의 중개로 미국과 이란은 2026년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세 차례 협상을 실시했다. 오만 외교부는 양국 간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⁴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2026년 2월 28일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주요 도시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공격을 다시 감행했고, 이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주요 지도부 인사들이 사망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주변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사기지와 걸프 지역의 석유 시설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여 공격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적국 또는 적국의 침략행위에 참여한 민간선박을 공격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의 통항을 금지했다. 나아가 중립국 선박에 대해서도 사전 통항허가, 지정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 이용, 통항요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⁵

한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이하 국제해협)이므로 이란의 해협 통제에 국제법 위반이고, 관습국제법상 통과통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키스탄의 중개로 미국과 이란은 2026년 4월 7일부터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그 직후인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blockade)를 실시하고 있다.⁶

국내외 언론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해협 봉쇄를 합법 또는 불법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제

법상 국제해협 통항에 관한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교전국과 중립국, 조약과 관습국제법에 관한 고차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면의 제약상 이 글에서는 (1) 평화 시 국제해협 연안국의 관할권과 이용국의 통항권, (2) 전쟁 시 국제해협의 통항 통제와 중립국 선박의 통항권, (3) 휴전 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휴전 합의 위반에 한정하여 호르무즈 해협의 고차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평화 시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관할권과 이용국의 통항권

1. 국제해협 연안국의 관할권과 이용국의 통항권

일반적으로 해협이란 지리적으로 두 개의 해역을 연결하는 자연적 통항로를 의미한다. 해협의 폭이 협소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연안국의 영해로만 이루어진 해협에서는 주권을 행사하여 외국선박의 항행을 규제하려는 연안국과 항행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이용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 규칙은 관습국제법과 다자조약으로 발전되어 왔다.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해협의 연안국과 이용국에게 어떠한 권리와 관할권이 인정되는지를 둘러싼 견해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관할권과 이용국의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해협에 관한 관습국제법,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이하 1958년 영해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란은 1958년 영해협약과 해양법협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미국은 1958년 영해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지만, 해양법협약에는 서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평화 시에 이란에게는 관습국제법만 적용되고, 미국에게는 관습국제법과 1958년 영해협약만 적용된다. 다만 해양법협약의 규정 중

기존 관습국제법을 성문화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관습국제법으로서 이란과 미국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결국 핵심은 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 제도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는지, 그러한 관습국제법이 이란에게도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1949년 코르푸 해협(Corfu Channel) 사건 판결에서 두 공해를 연결하는 코르푸 해협 북측 수로가 알바니아와 그리스의 영해로 이루어졌더라도 영국 군함은 평화 시에 정지될 수 없는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고 판시하였다.⁷ 이 판결은 관습국제법에 따라 군함이 두 공해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에서 해협 연안국도 정지시킬 수 없는 무해통항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949년 ICJ의 판결 내용은 1958년 영해협약 제16조 제4항에 대부분 반영되었다.⁸

해양법협약은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연안국에게 인정하였고, 연안국은 기존 3해리에서 12해리까지 영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영해 폭이 3해리일 때에는 국제해협 중간에 대부분 공해 항로대가 존재하여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영해 폭이 12해리로 확대되면서 그 폭이 24해리 이상이 되지 않는 국제해협은 모두 연안국의 영해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제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누리던 해협이용국은 훨씬 더 축소된 무해통항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 강국은 국제해협에서 무해통항권보다 더 자유로운 통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양법협약은 해협 연안국의 영해로 편입된 국제해협에서 방해받지 않는 통과통항권을 해협 이용국에게 부여함으로써 타협점을 도출하였다. 즉, 해협 연안국은 국제해협에서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고, 해협 이용국은 무해통항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잠수함의

잠항과 항공기의 상공비행을 포함하는 통과통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통과통항권은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보다 항행의 자유가 더욱 강화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은 모두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통과통항 제도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는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왔다.

2. 미국의 입장

미국은 해양법협약의 통과통항 제도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으며,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3년에 미국은 해양법협약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항행과 상공비행처럼 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전통적인 해양의 이용에 관한 이익 균형을 수락하고 그에 따라 상호주의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⁹ 미국은 평화 시에 이란이 일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관습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법협약 제26조는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고,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만 그 선박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해협은 영해보다 더 광범위한 통과통항권이 보장되는 수역이므로 영해에서 단순한 통항을 이유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면 국제해협에서는 더욱이 그러한 징수는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부 미국 학자는 해양법협약이 영해 폭을 12해리로 확대하는 대신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일괄타결의 내용이므로, 이란이 영해 폭을 12해리로 확대했다면 통과통항권 제도를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⁰

3. 이란의 입장

이란은 1982년에 해양법협약에 서명하면서 통과통항 제도는 비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선언을 제출한 바 있다.¹¹ 이란은 국

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을 규정한 해양법협약 제38조는 기존의 관습국제법을 성문화한 것이 아니라 이 협약 당사국 간의 등가교환적 합의이므로 당사국만 구속한다고 주장했다. 즉 통과통항 제도는 관습국제법의 일부가 아니며, 해양법협약의 당사국만이 통과통항권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란은 해양법협약 제21조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려는 군함에 대해 연안국이 사전허가 요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란은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 제도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지 않았고, 연안국은 영해에서 안보 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²

한편,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계획을 승인했다.¹³ 이 계획은 보안, 선박 안전, 환경 보호, 재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이란의 리알화 기반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담고 있다. 로이드 리스트(Lloyd's List)에 따르면, 2026년 3월에 2주간 26척의 선박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통행료(tollbooth) 체제에 따라 사전 승인된 경로로 해협을 통과했으며, 최소 2척의 선박이 통행료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⁴

지면의 제약상 양국의 입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이란이 1970년대에 해양법협약을 협상할 때부터 일관되게 통과통항 제도에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이를 국가실행으로 실천했다는 것이다.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관습국제법의 확인에 관한 결론 초안에서 강행규범에 관한 문제가 아닌 한 지속적 반대자를 인정한 바 있다.¹⁵ 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이 강행규범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한 미국이 관습국제법의 지위를 입증하더라도 그러한 관습국제법의 형성 초기부터 명

시적·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란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결국, 미국과 이란 사이에 다툼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규칙은 ICJ가 1949년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평화 시에는 국제해협에서 정지될 수 없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해협 연안국은 그러한 무해통항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는 관습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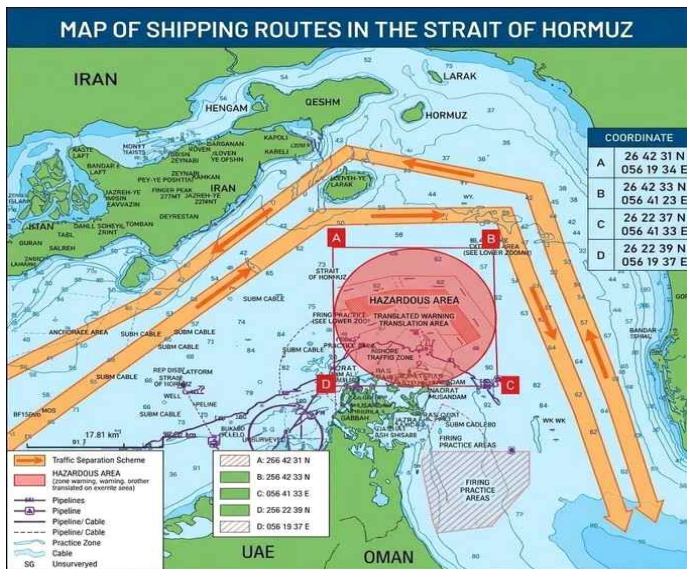
III. 전쟁 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통제와 중립국 선박의 통항권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이 시작된 직후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통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파키스탄의 중개로 미국과 이란은 2026년 4월 7일부터 2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휴전 중인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에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개시하고,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출입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 회항, 나포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 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립국 선박의 통항을 통제하거나 봉쇄하는 조치가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인지, 그리고 중립국 선박은 전쟁 시에 국제해협에서 어떠한 통항의 권리를 향유하는지 문제된다.

먼저 국내의 언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립국 선박을 공격하거나 통항을 통제함으로써 해협을 봉쇄 또는 사실상(*de facto*) 봉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¹⁶ 그러나 해협의 통항을 통제하는 것과 봉쇄는 국제법상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이란의 해협 통제 조치를 봉쇄라고 부르는 것은 법률용어의 오용이다. 국제법상 봉쇄란 적국의 영토에 속하거나 적국의 통제하에 있는 특정 연안 지역으로 향하거나 그곳에서 출발하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접근을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는 침략행위에 대한 자위권 행사이며, 침

략국과 침략행위에 참여하는 국가의 소유이거나 그와 관련된 선박의 통항을 금지할 뿐 중립국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다. 이란 외교부 장관은 2026년 3월 22일자 성명서에서 침략국과 그러한 침략행위에 참여하는 국가의 소유이거나 그와 관련된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것이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close)하거나 해상교통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¹⁷ 나아가 중립국 선박이 침략국의 적대행위에 참여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이란 당국이 제시하는 안전 및 안보 규칙과 조치를 준수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란의 영해 내측에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하였다.¹⁸ 즉, 이란은 국제법상 봉쇄권을 원용하지도 않았고, 이란의 해협 통제에 해전법(law of naval warfare)에 따른 봉쇄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한다.

〈이란이 공표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대〉



[출처: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에브라힘 아지지(عزیزی)의 소셜 미디어 X]

그렇다면 전쟁 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적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박뿐만 아니라 중

립국 선박의 통항을 통제할 권리를 갖는가?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이면서 통과통항 제도의 지속적 반대자인 이란에게도 ICJ가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 확인했던 관습국제법 규칙은 구속력을 갖는다. 즉 해협 연안국은 국제해협에서 정지될 수 없는 무해통항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한 무해통항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란은 전쟁 중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립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해야 하고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다. 이란이 전쟁 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 분리방식을 설정하여 적국과 적대행위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통항을 통제하는 것은 관습국제법상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마주보고 있는 오만의 연안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기존 항로대에 위험구역(hazardous area)을 설정하고, 이란의 연안에 가까운 항로대를 일방적으로 공표하였다. 이는 중립국 선박이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인 오만 연안에 가까운 호르무즈 항로대에서 통과통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즉 이란은 공식 성명에서 중립국 선박의 통항을 보장하는 것처럼 공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란이 부과하는 조건을 준수해야만 통항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란과 오만 간에 영해 경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이란이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 자체가 관습국제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립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통행료 납부를 필수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이란의 행위는 무해통항권을 보장해야 할 관습국제법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조치가 관습국제법에 해당하는 해양법협약상의 통과통항 제도에 위반되므로 호르무즈 해협을 신속하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상선을 공격한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며, 호르무즈 해협에는 중립국 상선의 통항을 차단하기 위해 대안적 편의항로가 없는데도 기뢰를 부설한 것은 해양법협약, 헤이그 제Ⅷ협약, 뉴포트 매뉴얼(Newport Manual)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미국 학자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통과통항을 정지시킬 수 없으며,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아닌 중립국으로 에너지를 수송하는 선박의 통항을 차단하는 것은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제위법행위로서 국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

이란은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하거나 해협의 통항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이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기존 항로대에 위험구역 설정하고 자국 연안에 가까운 항로대를 지정함으로써 해협 통제를 위한 장악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란의 조치가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비당사국인 이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관습국제법인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미국이 공식적으로 봉쇄 조치를 실시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립국의 선박과 항공기가 항행과 상공비행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앞에서 살펴본 평화 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체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²⁰ 이에 관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Ⅳ. 휴전 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휴전 합의 위반

미국은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²¹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개로 2026년 4월 7일부터 2주간 휴전에 합의한 이후 종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이 공개한 미국과의 휴전 합의 10개 조항에 따르면, 침략 재발 방지, 이란의 호르

무즈 통제권 유지,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개시하고,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출입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 회항, 나포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²² 미국 중부사령부는 봉쇄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이외 국가의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하고, 봉쇄 시작 전 상선들에 추가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²³

휴전 기간에 미국이 개시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산레모 매뉴얼과 뉴포트 매뉴얼이 규정하고 있는 통보, 실효성, 공평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봉쇄가 휴전 합의 이전 무력충돌 시에 실시되었다면 합법적인 교전행위로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는 휴전 기간에 개시되었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을 규정한 휴전 합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해상 봉쇄는 전쟁 시에 적국의 수출입을 방해하는 합법적인 수단이지만, 이란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봉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란과의 휴전 합의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2026년 5월 7일 기준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미국이나 이란 모두 휴전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았고 종전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휴전 합의 위반 문제는 향후 진행될 종전 합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Ⅴ. 전망과 시사점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면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

제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국제법이 무용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²⁴ 물론 국제법이 모든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인류를 전쟁이라는 만성적 질병에서 구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연쇄살인범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다고 해서 형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무용하다고 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하는 상습범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대국이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법을 취사선택하거나 중대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여 국제법을 위반하는 일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사용 결의가 없었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지만, 무력침공을 감행했던 국가를 제외한 국제공동체에게 유엔 헌장과 국제인도법을 비롯한 국제법은 여전히 존재하며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다. 강대국들조차도 자국의 국제법 위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법 근거를 원용하거나 새로운 국제법 논리를 제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법의 규범력은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게 바로 직접적인 제재나 처벌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서도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대방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란의 통항 통제와 미국의 해상봉쇄를 둘러싸고 전쟁과 외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에서도 국제법은 가장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지위와 통항권 문제는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에 대한 지속적 반대자인 이란이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다. 특히 전쟁이 계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이용국은 국제해협에서 통과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이란의 법적 입장에 동의

하지 않더라도 이란이 부과하는 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는 실행이 굳어진다면 이는 자유로운 항행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국제해양법 질서에 균열을 가져오는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들은 중립국으로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 무력충돌 시에도 국제해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통항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단순 통항에 대한 통행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단일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한편, 종전을 위한 협상이 잘 진행되어 종전 협정 체결 과정에서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통항제도에 관한 의제가 논의된다면, 전쟁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다른 해협연안국과 주요 이용국들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을 보장하면서도 평화적이고 안전한 통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의 연안국들이 해협 이용국들과 협의체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여 해협의 안보, 안정성, 환경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사례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국민일보, “호르무즈 해협 갇힌 한국 선원 160명… ‘프로젝트 프리덤’에 기대·불안 교차”, 2026.5.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7886748>).
- 2 US Department of State, “Adoption of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18 October 2015.
- 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srael-Iran Conflict, U.S. Strikes, and Ceasefire”, IN FOCUS, 26 June 2025,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3032>).
- 4 Foreign Ministry of Oman, “Minister says significant progress in US-Iran negotiations”, 26 February 2026, (<https://www.fm.gov.om/en/37995>).
- 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on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in the Strait of Hormuz”, 22 March 2026, (<https://en.mfa.gov.ir/portal/newsview/785309>).
- 6 U.S. Central Command, U.S. to Blockade Ships Entering or Exiting Iranian Ports, April 12,
- 7 Corfu Channel case, Judgment of April 9th, 1949: I.C.J. Reports 1949, pp. 28-30.
- 8 Hugo Caminos and Vicent P. Cogliati-Bantz, The Legal Regime of Straits: Contemporary Challenges and Sol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112-115.
- 9 Statement on United States Oceans Policy, 10 March 1983.
- 10 James Kraska, “Legal Vortex in the Strait of Hormuz”, 54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23 (2014), pp. 364-366.
- 11 AFP, “Iran parliament commission approves Hormuz toll plan: state TV“, March 30, 2026, (<https://www.aa.com.tr/en/middle-east/iran-s-parliament-committee-approves-strait-of-hormuz-toll-plan-reports/3885878>).
- 12 Ibid.
- 13 Anadolu Agency, “Iran’s parliament committee approves Strait of Hormuz toll plan: Reports“, April 1, 2026. (<https://www.aa.com.tr/en/middle-east/iran-s-parliament-committee-approves-strait-of-hormuz-toll-plan-reports/3885878>).
- 14 Lloyd’s List, “Tehran’s ‘toll booth’ system is now controlling Hormuz traffic”, 25 March 2026, (<https://www.lloydlist.com/LL1156720/Tehrans-toll-booth-system-is-now-controlling-Hormuz-traffic>).
- 15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raft conclusions on ident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8, vol. II, Part Two.
- 16 연합뉴스,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의결…국가안보위서 최종 결정”, 2025.6.22.; 해사신문,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정, 2025.06.23.; 매일경제, 이란, 호르무즈

필자 소개

김원희 박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제법 헌안 Brief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한국제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 해협 봉쇄...유가 100달러 현실로?, 2026.3.1.; The Times of India, “No ship allowed: Iran blocks Strait of Hormuz; US urges ships to avoid Gulf after US-Israeli strike”, February 28, 2026; The New York Times, “Both Iran and U.S. Blockade Strait of Hormuz”, April 24 2026.
- ¹⁷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tatement on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in the Strait of Hormuz, 22 March 2026, (<https://en.mfa.gov.ir/portal/newsview/785309>).
- ¹⁸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ran Update Special Report”, April 11, 2026.
- ¹⁹ Mark Nevitt, Legal and Operational Issues in the Strait of Hormuz: Transit Passage Under Fire, 15 March 2026, (<https://www.justsecurity.org/133996/legal-operational-strait-hormuz-transit-passage>).
- ²⁰ 산레모 매뉴얼 제27항과 제33항에 따르면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과 정지될 수 없는 무해통항권은 무력충돌 시에도 계속 적용된다.
- ²¹ Aljazeera, How long can Iran survive the US’ s Hormuz blockade?: And just how long can the US hold out?, 24 April 2026.
- ²² U.S. Central Command, U.S. to Blockade Ships Entering or Exiting Iranian Ports, Press Release, 12 April 2026., (<https://www.centcom.mil/MEDIA/PRESS-RELEASES/Press-Release-View/Article/4457255/us-to-blockade-ships-entering-or-exiting-iranian-ports>).
- ²³ Ibid.
- ²⁴ 서울신문, “이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커지는 국제법 무용론”, 2026.3.4.,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3/04/20260304500226>)